

| 위원회 동정 |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논의 진행

### 김미영 전문위원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3차~9차 전체회의에 이르기까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 개선범위, 과제 및 쟁점 등에 관한 전문가 발제와 노사정 간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8월 3일 <제3차 전체회의>에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상 쟁점 논의를 했다. 세부 논의사항은 (1) ILO 국제노동기준의 의의와 우리나라 공무원·교원 관련 노동법제의 과제와 (2)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논의 상황이었다. 8월10일 <제4차 전체회의>에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국내 노동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과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1)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 범위를 노조법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어 8월 22일 <제5차 전체회의>에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인 국내법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단체의 입장을 듣는 첫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경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쟁점사항에 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한국노총이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9월 14일 <제6차 전체회의>는 노사단체의 의견을 제안하는 두 번째 순서로 민주노총이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과제'를 짰었다.

9월 28일 <제7차 전체회의>에는 ILO기본협약 관련 국내법 쟁점 4개 우선의제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발제와 논의로 '노조설립신고, 법외노조 통보, 노조 임원 자격제한'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 노조가입범위'가 집중 조명됐다.

향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로드맵에 대해 공익위원과 노사정 주체 간 이견을 모으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